보증서확인번호 : WBJ17-16316-84805-59259

하 자 보 수 보 증 서

보증서번호 제 202100220191 호

보 증 금 액	일금 이백일십사만팔천팔백삼십팔원 (₩2,148,838)			
계 약 금 액	일금 칠천일백육십이만칠천구백삼십육원 (₩71,627,936)			
계 약 명	신길동 4920-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(내력구조부,지반공사)			
계 약 일	2021 년 02 월 01 일			
계약이행기일	2021 년 09 월 16 일			
하자담보책임기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31 년 09 월 15 일 까지			
보 증 기 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31 년 09 월 15 일 까지			
계 약 자	상 호	아라건설(주)	대 표 자	강은호
특 기 사 항	1.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 2.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(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)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.			

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.

2021 년 09 월 15 일

건설공제조합
Construction Guarantee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

영등포구 귀하

발 급 지 점 : 내포지점, 041-631-4101
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3층 (센트럴타워)
중부보상센터 : 063-276-4560
고객상담실 : 1588-1444

이사장 최 영 묵
대리인 내포지점장 권상철
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※ 보증서 발급사실 및 약관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cgbest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우리 조합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보증서확인번호 : WBJ17-16316-84812-67595

하 자 보 수 보 증 서

보증서번호 제 202100220194 호

보 증 금 액	일금 일백육십일만일천육백삼십원			(₩1,611,630)
계 약 금 액	일금 오천삼백칠십이만구백오십사원			(₩53,720,954)
계 약 명	신길동 4920-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(마감공사)			
계 약 일	2021 년 02 월 01 일			
계약이행기일	2021 년 09 월 16 일			
하자담보책임기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23 년 09 월 15 일 까지			
보 증 기 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23 년 09 월 15 일 까지			
계 약 자	상 호	아라건설(주)	대 표 자	강은호
특 기 사 항	1.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 2.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(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)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.			

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.

2021 년 09 월 15 일

건설공제조합
Construction Guarantee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

영등포구 귀하

발 급 지 점 : 내포지점, 041-631-4101
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3층 (센트럴타워)
중부보상센터 : 063-276-4560
고객상담실 : 1588-1444

이사장 최 영 묵
대리인 내포지점장 권상철
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※ 보증서 발급사실 및 약관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cgbest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우리 조합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보증서확인번호 : WBJ17-16316-84818-53817

하 자 보 수 보 증 서

보증서번호 제 202100220193 호

보 증 금 액	일금 사백이십구만칠천육백칠십육원 (₩4,297,676)			
계 약 금 액	일금 일억사천삼백이십오만오천팔백칠십삼원 (₩143,255,873)			
계 약 명	신길동 4920-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(목,창호,조경공사 등)			
계 약 일	2021 년 02 월 01 일			
계약이행기일	2021 년 09 월 16 일			
하자담보책임기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24 년 09 월 15 일 까지			
보 증 기 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24 년 09 월 15 일 까지			
계 약 자	상 호	아라건설(주)	대 표 자	강은호
특 기 사 항	1.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 2.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(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)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.			

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.

2021 년 09 월 15 일

건설공제조합
Construction Guarantee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

영등포구 귀하

발 급 지 점 : 내포지점, 041-631-4101
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3층 (센트럴타워)
중부보상센터 : 063-276-4560
고객상담실 : 1588-1444

이사장 최 영 묵
대리인 내포지점장 권상철
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※ 보증서 발급사실 및 약관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cgbest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우리 조합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보증서확인번호 : WBJ17-16316-84824-17575

하 자 보 수 보 증 서

보증서번호 제 202100220192 호

보 증 금 액	일금 이백육십팔만육천사십칠원 (₩2,686,047)			
계 약 금 액	일금 팔천구백오십삼만사천구백이십원 (₩89,534,920)			
계 약 명	신길동 4920-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(대지조성,철근콘크리트,철골,조적,지붕,방수)			
계 약 일	2021 년 02 월 01 일			
계약이행기일	2021 년 09 월 16 일			
하자담보책임기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26 년 09 월 15 일 까지			
보 증 기 간	2021 년 09 월 16 일 부터 2026 년 09 월 15 일 까지			
계 약 자	상 호	아라건설(주)	대 표 자	강은호
특 기 사 항	1.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 2.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(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)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.			

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.

2021 년 09 월 15 일

건설공제조합
Construction Guarantee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

영등포구 귀하

발 급 지 점 : 내포지점, 041-631-4101
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3층 (센트럴타워)
중부보상센터 : 063-276-4560
고객상담실 : 1588-1444

이사장 최 영 묵
대리인 내포지점장 권상철
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※ 보증서 발급사실 및 약관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cgbest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우리 조합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하자보수보증약관

제1조 (보증책임) ① 건설공제조합(이하 "조합" 이라 한다)은 계약자(이하 "채무자" 라 한다)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(준공)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"보증사고" 라 한다) 그 상대방(이하 "보증채권자" 라 한다)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②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등이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1항의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보증사고)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2조 (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)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2.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3. 보증서를 보증목적(주계약내용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4.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
5. 미시공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6. 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7.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채무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을 때
8. 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
제3조 (보증채무의 이행방법) ① 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제380조에 따라 제3자(이하 "하자보수업체" 라 한다)를 지정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.
② 조합이 제1항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공사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등에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.

제4조 (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)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,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
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제5조 (보증서의 효력상실)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,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. 다만,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6조 (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)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,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보증서 또는 그 사본
2.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
4. 그 밖에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
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제7조 (보증채무의 확인조사)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제8조 (보증금 지급시기)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9조 (대위 및 구상)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분쟁시 조정) 조합과 보증채권자간에 하자담보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"건설분쟁조정위원회"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"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" 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관할법원 및 준거법)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